#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41

발의연월일: 2021. 8. 12.

발 의 자:최혜영·심상정·홍영표

허종식 · 김상희 · 강준현

강선우 · 김승원 · 이은주

송재호·박성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이후에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므로 장기요양급여의 정확한 재정추계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산출하려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이 늦어져 다음연도에정확한 예산반영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현행 건강보험료 산출 방식을 적용하

되,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45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의 월별 장기요양보험료 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1. 보수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 월액에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2.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 월액에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의 월별 장기요양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장기요양보험료액은 같은 법 제72 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장기요양보험료액은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④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⑤ 지역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전단 중 "제76조"를 "제74조"로, "납부·징수"를 "납부·징수· 면제·경감"으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율
- 1의2.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 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 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 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 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 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 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의 월별 장기요양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 다.

- 1. 보수월액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법 | 제70조에 따라 산정 한 보수월액에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2.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법 . 제71조에 따라 산정 한 소득월액에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의 월별 장기요양보험료액은 세대 단위 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 한 세대의 월별 장기요양보험

료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5 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부 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별 장기요양보험료액은 가입자 의 장기요양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④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 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 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 령령으로 정하되, 국외에서 업 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 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으로 한다.
- ⑤ 지역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 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제45조 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로 본다.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전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 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신 설>

2. ~ 4. (생략)

등에 관한 준용)
제74조
<u>日子・3子・七州・3石</u>
·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장가입
자의 장기요양보험료율
1의2.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역
<u>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부</u> 과점수당 금액
2. ~ 4. (현행과 같음)